

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

□ 제정이유

-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추진코자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정정보센터내에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인·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·직업정보제공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(안 제2조, 제4조)
- 센터내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취업정보센터에 2인, 일일 취업지원센터에 3인 이내를 각각 배치토록함(안 제6조)
- 상담원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서류전형·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함(안 제8호)
- 상담원은 시장이 채용하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토록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호)
- 상담원의 보수·복무등 필요한 사항을 직업안정법 및 노동부 상담원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10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은 IMF이후 실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고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설치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민간직업 상담요원의 배치 또한 직업안정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IMF이후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 및 기업체등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경영혁신을 지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센터내 최고 5인 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으며 이는 동 업무의 수요를 판단하여 적정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참고로 '99년 이후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'99년 1년간 총 4,337명, 2000년에는 4월말 현재 총 2,016명으로 이중 '99년에 504명이 2000년 4월말 현재 243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양하여 월 평균 46명이 파주시의 취업알선 창구를 통하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